규제영향분석서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목 차>

1.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인상

금융위원회

〈 규제의 개요 〉

1. 규제사무명	과태료 5	부과 기준금역	액 인상			
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		이름	홍상준
2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담당부서 (과)	서민금융과		작 성	직급	행정사무관
464 5448	국장	윤창호		자	연락처	02-2100-2612
	과장	하주식			지급 행정사무관 연락처 02-2100-2612 이메일 hongguqaz@korea.k 행령 제8조2 및 [별표3] 등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가), 입법예고 -	
3. 관계법령 •고시 등	대부업법	제21조, 대특	부업법 /	니행령	제8조2	및 [별표3]
	2	인원수 또는 규모			의견내용	
4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 피규제자	대부업자	대부업자(8,	980개), 입법예고		-
	이해관계자	하주식 제21조, 대부업법 유형 인원수 규 대부업자 대부업자 관련협회 대부금	대부금융	G 협회	입법예고	_
5. 규제존속기한	없음(지속	추진 필요)				
6. 구분 (신설 또는 강화)	강화					
7. 신설(강화) 규제의 요지	제재의 실 액을 인상		를 위하여	여 각	위반행위	별 과태료 기준금
8.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	구 분 법 시행령 감독규정		기 등록 및	두 및 금· 금융이		호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시행령

□ 규제 신설 (또는 강화) 내용

-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**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을** 법률상의 **과태료 부과한도 상향***에 맞추어 **정비**
 - *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, 2천만원 한도 → 1천만원, 5천만원 한도

〈신·구 조문 대비표〉

〈心・丁 仝	亡 切り並/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	제8조의2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-
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	
음 각 호의 <u>사항</u> 을 고려하여 <u>부과한</u>	<u>사항 등</u> <u>부과하</u>
<u>다.</u> 1. ~ 3. (생 략)	<u>거나 감면할 수 있다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[별표 3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 (제 12조 관련)	[별표 3]
1. 일반 기준	1
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 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. 나.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가중하거나 감경할수 있다. 이 경우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. 	가

현	행					개	정	안			
2. 개별 기준			~		2						
			위: 면]료 ·								
	해당		'쇼 기준	· · ·				부과			
위반행위	조문			3회				<u> </u>			
	_	1회	2회	아상							
가. 법 제3조제7항을	법 제21				가				<u>200</u>	<u>400</u>	600
위반하여 분실신고	조제2항	20	100	200				<u> 반이</u>	50	100	200
를 하지 아니한 자	제1호							<u>아닌자</u>			
	HJ -레O1				나			<u>법인</u>	<u>500</u>	<u>750</u>	<u>1,000</u>
나.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등록증을 반납	법 제21 조제2항	50	250	500				<u> 밥이</u>	100	250	500
하여 등록증을 반납 하지 아니한 자	소세2 8 제2호	50	200	300				<u>아닌자</u>	100	200	000
	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										
다. 삭제 <2013.6.11>					 라						_
라. 법 제5조제1항을	ਸੀ ਐਨਾ					_		<u>법인</u>	<u>200</u>	<u>400</u>	600
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1호부터 제3		20	100	200							
│ 호까지의 변경사항 │ 을 변경등록하지	조제1항 제1호	<u>20</u>	100	200				빤이	50	100	200
글 전경공득에서 아니한 자	세1호							<u>아</u>			
마. 법 제5조제1항을					마			പ്പ് റി	500	750	1000
위반하여 법 제3조	법 제21							법인	<u>300</u>	<u>730</u>	<u>1,100</u>
제3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규정 중	조제1항	<u>50</u>	<u>250</u>	<u>500</u>				밥이			
변경사항을 변경등	제1호								<u>100</u>	<u>250</u>	<u>500</u>
록하지 아니한 자								<u>아</u> 라			
 바. 법 제5조제2항을	법 제21				바			<u>법인</u>	<u>500</u>	<u>750</u>	1,000
위반하여 폐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	· ·	<u>50</u>	<u>250</u>	500				빲이	100	050	500
글 아시 아니인 사 	제1호							반이 <u>아</u> 사	100	<u>250</u>	500
사. 법 제5조의2제1항					사			<u>법인</u>			
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상호 중에 "대	l										
부" 또는 "대부중개"	소세1앙	$\frac{200}{}$	<u>500</u>	1,000				반이	200	500	1000
라는 문자를 사용하 지 아니한 자	제2호							<u>아</u>			
아. 법 제6조제1항 또				\vdash	o}						
│ 는 제3항을 위반하											
여 계약서를 교부하 지 아니한 자 또는								법인	600	1m	2m)
Ⅱ 같은 조 제1항 각								<u> </u>	000	1,000	400
호 또는 같은 조 제 3항 각 호에서 정한											
∥ 내용 중 전부 또는	집 세21	000	F00	1000							
∥ 아니한 계약서를 교	조제1항 제3호	<u>200</u>	<u>500</u>	1,000							
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	세3모 							빲이			
₩ 같은 조 제3항 각								아닌자	<u>200</u>	<u>500</u>	1000
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								<u>- FT/1</u>			
∥ 를 거짓으로 적어											
계약서를 교부한 자											

현	행					개	정	안			
자. 법 제6조제2항 또 는 제4항을 위반하 여 설명을 하지 아 니한 자	그네크	<u>50</u>	<u>250</u>	500	자			법인 법) 합의 아닌자	100	750 250	
차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 관의무를 이행하지	법 제21 조제2항 제4호	<u>50</u>	<u>250</u>	500	차			법인 법안	<u>500</u>	750 250	
아니한 자 카.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약서 및	법 제21				카			<u>아닌자</u> 법인			
계약관계서류의 열 람을 거부하거나 관 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	조제2항 제5호	<u>50</u>	<u>250</u>	500				<u>밥</u> 이	100	<u>250</u>	<u>500</u>
타. 법 제6조의2를 위 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	그 네크	200	<u>50</u> 0	1,000	타	 		법인	600	1,000	2000
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	제5호					 -		<u>밥이</u> 이닌자	200	<u>500</u>	1,000
파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소득·재 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 출받지 아니한 자	조제1항	<u>50</u>	<u>250</u>	500	파	 		법인 법인 방비 아닌자		750 250	
하. 법 제7조의2를 위 반하여 제3자에게	법 제21 조제1항	50	250	500	하	 		법인	500	<u>750</u>	1,000
담보제공 여부를 확 인하지 않은 자 거. 법 제9조제1항을	제6호의2 번 제21				71			변 이닌자 법인	100 500	250 750	
위반하여 중요 사항 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	조제1항 제7호	<u>50</u>	<u>250</u>	500				변 하 사	100	<u>250</u>	500
너. 법 제9조제2항 또 는 제3항을 위반하 여 광고를 한 자	법 제21 조제1항 제8호	200	<u>500</u>	1,000	너			발 아 아		500	1,000
더.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 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		<u>50</u>	<u>250</u>	500	더	 	 	법인 법원 <u></u> 양신자	<u>500</u> <u>100</u>	750250	
러.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		<u>500</u>	1,000	1500	러			<u>법인</u> 밥이	<u>1,000</u> <u>500</u>		

현			7	'H	정	안						
경우	제8호								아닌자			
머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	법 제21 조제1항 제9호	200	<u>500</u>	1,000	머				법인 법) 합의 이신자	<u>600</u> <u>200</u>	<u>1,000</u> <u>500</u>	
버.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종업원을 고용	법 제21 조제1항	50	250	500)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			법인	<u>500</u>	<u>750</u>	1,000
하거나 업무를 위임 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	제10호	<u>50</u>	200	300	-		_		<u>밥이</u> <u>아닌자</u>	100	<u>250</u>	<u>500</u>
서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	법 제21 조제2항	50	250	500	서		<u>z</u>	 세1항	<u>법인</u>	<u>600</u>	1,000	<u>2000</u>
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<u>제7호</u>		200	500				<u>0호</u> 12	<u>밥이</u> <u>이닌자</u>	200	<u>500</u>	1000
어. 법 제10조의2를 위	법 제21				어				<u>법인</u>	<u>200</u>	<u>400</u>	<u>600</u>
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	조제2항 제8호	<u>20</u>	100	200					<u>밥이</u> 이닌자	<u>50</u>	100	200
저. 법 제12조제2항 및	법 제21				저				<u>법인</u>	1000	2000	3000
제3항에 따른 검사 에 불응하거나 검사 를 방해한 자		<u>500</u>	1,000	<u>1,500</u>					<u>법원이</u> 이건자	<u>500</u>	1,000	<u>1500</u>
처. 법 제12조제1항 또 는 제5항에 따른 보	법 제21				처				법인	<u>500</u>	<u>750</u>	1000
고 또는 자료의 제 출을 거부하거나 거 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	조제2항 제9호	<u>50</u>	<u>250</u>	500					<u>밥이</u> <u>아닌자</u>	100	<u>250</u>	<u>500</u>
커.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	H] -1]∩1				커				법인	600	1,000	2000
제출하지 아니하거 나, 거짓으로 작성하 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 니하고 제출한 자	법 제21 조제1항 제12호	200	<u>500</u>	1,000					<u>법원</u> 이닌자	200	<u>500</u>	<u>1,000</u>
터. 법 제18조의2제5항 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모	법 제21				터				법인	500	<u>750</u>	1,000
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 청을 사용한 자	조제2항 제10호	<u>50</u>	<u>250</u>	<u>500</u>					<u> 밥이</u> <u>이신자</u>	100	<u>250</u>	<u>500</u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 □ 대부업법 개정으로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*에 맞추어 정비하고, *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, 2천만원 한도 → 1천만원, 5천만원 한도
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
□ (정부개입 필요성)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□ 법 개정('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 *됨에 따라 시행 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
* 법 제21조제1항 위반인 경우 2천만원 → 5천만원, 법 제21조제2항 위반인 경우 5백만원 → 1천만원
○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인의 경우 현행 3~10배 수준, 개인 의 경우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
□ 아울러,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 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

< 타 법령상 과태료 면제규정 > -

- 공정거래법 시행령(§65②):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<u>과태료</u>를 그 위반의 정도,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<u>감면</u>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(과태료)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 - * 면제 사유는 공정위 고시(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)에 규정→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,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오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
- 예금자보호법 시행령([별표3]1.다.) :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.
- □ (선택 근거)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'15.9월)^{*}의 일환
 - * 대부업법 개정('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
 -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 -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**과태료 부과한도 인** 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- □ 한편, **과태료 부과금액 인상**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**일부 우려**가 있으나
 -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**금전제재를 현실화** 하는 수준이고
 -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중

3. 기대 효과

- □ "솜방망이 금전제재"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
 - 대형 금융사고·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"솜방망이 제재"라는 비난이 많았음
 - □ 대부업법 시행령의 **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~3배 인상**함으로써 금 전제재 제도의 **실효성 제고 기대**
- □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·금액의 **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**하여 **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**
 - ㅇ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강화를 통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예방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(규제목	적) 금·	융회사	. 및	임직원	등의	위법	행위에	대한	금전제	∥재
강화를	통해	유사	위법	행위를	억제하	-여,	금융회시	나의 각	신뢰성,	금
융시장	안정성	및 금	금융소	비자 년	보호 등	편이	l을 제공	<u>7.</u>		

□ (규제수단)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

-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□ 해당사항 없음
-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- o 해외사례
- □ 영국·미국 : 영국은 Financial Penalty,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·과징금에 해당하는 금 전제재를 부과
 - 우리나라는 과태료·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·부과요건·부과금
 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,
 -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
 "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"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
 -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*
 - *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"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"으로 규정
 -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*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
 - * 위반행위 1일당 (1단계) \$7,500 / (2단계) \$37,500 / (3단계) \$1,425,000
 -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제 재를 부과해 옴

- · '16년 세계 최대은행인 **웰스파고**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(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)가 **\$1억**(1천억원), OCC가 **\$3.5천만**(3.5백억원), LA City가 **\$5천만**(5백억원)의 **민사제재금**을 부과
- · '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\$2억(2천억원), FRB가 \$2억(2 천억원), OCC가 \$3억(3천억원)의 민사제재금을, 영국 금융당국은 £1.4억(2천억원)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- · '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갤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\$5천만(5백억원)의 약 2배에 가까운 \$9천만(9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- □ 독일·일본 :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 - 독일은 과태료·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, Bußgeld라는 단일 금전 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(최대 100만유로)
 -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**과태료·과징금*을 구분**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(최대 30억원)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
 - *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

o 타법사례

- □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
 - **대부업법 시행령**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**공정거래법 시행령**과 비교하 더라도 **매우 낮은 편**
 - **공정거래법**은 허위 공시,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**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**까지 과태료를 부과*
 - *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- 반면, 대부업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1.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

□ 금융법 사례 분석

- 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**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**으로 금 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
 - * '15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3.6억원(건당 12백만원), 개인 29.2억원(건당 5백만원) '16년 과태료 부과금액: 기관 35.6억원(건당 16백만원), 개인 24.5억원(건당 6백만원)
- □ 법인인 자 최대 1억원, 법인이 아닌 자(임직원 등) 최대 5천만원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11개 주요 금융법* 시행 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
 - * 금융지주 · 은행 · 보험 · 자본시장 · 지배구조 · 여전 · 저축은행 · 신협 · 신용정보 · 전자금융 · 대부업법
- ②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**업권간 제재 형평**을 제고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- □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**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'15.9월)의 일환
 -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,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**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** 어려워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
o 규제 차등화 방안 □ 과태료는 동일 권역의 기관 등이 행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 칙적으로 **동일한 수준의 제재**가 적용됨 2.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□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 ○ 또한,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□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 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. 추진 경과 □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**과태료 기준금액 인상**은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'15.9월)의 후속조치임 ㅇ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 ('15.12월, '16.10월)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(심층인터뷰 등)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·수렴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□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**지속적으로 모니터링**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□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・책임성을 강화**하는 「제재개혁」정책의 일환으로
 -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**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